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12
------	------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과 의안 발의 활성화 및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개의·휴회·회기·선포·의사일정 등(안 제2조 ~ 제8조)
- 다. 의안 및 동의(안 제9조 ~ 제22조)
- 라. 발언 및 표결, 회의록(안 제23조 ~ 제44조)
- 마. 위원회 및 예산안과 결산심사(안 제45조 ~ 제66조)
- 바. 징계 및 보칙(안 제67조 ~ 제7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4. 4. 16. ~ 2024. 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의

제1절 개의, 휴회, 회기, 선포, 의사일정 등

제2조(개의) 본회의의 개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회)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회기) ① 회의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

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4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같은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동의를 의제성립)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6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7조(의안·동의를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

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변안) 변안동의를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한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가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19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0조(재회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의결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3절 발 언

제23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4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의원의 발언을 계

속하게 한다.

제2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7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 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29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를 정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되,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의중에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2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3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4절 표결

제34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5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6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투표의 수보다 명패의 수가 많을 때에는 그 많은 수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0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절 회의록

제41조(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위 원 회

제45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제4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8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9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4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의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6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7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0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2조(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3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4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5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승인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징계

제67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68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6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의의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0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정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해촉·제척·회피) 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3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74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7장 보 칙

제75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76조(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시행 2022. 10. 05.] [의회규칙 제25호, 2022. 10. 0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정 [1995.03.01 의회규칙 제 1호]

개정 [1998.07.03 의회규칙 제 2호]

개정 [2000.03.21 의회규칙 제 3호]

(일부개정) 2004.03.11 의회규칙 제 5호

(일부개정) 2006.07.28 의회규칙 제 9호

(일부개정) 2008.03.27 의회규칙 제 11호

(일부개정) 2012.05.07 의회규칙 제 13호

(일부개정) 2021.03.18 의회규칙 제17호

(일부개정) 2022.01.10 의회규칙 제23호

(일부개정) 2022.10.05 의회규칙 제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7., 2022.1.10.>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1., 2006. 7. 28.>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6. 7. 28.>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6. 7. 28.>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장 제목 신설 2022.1.10.]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금천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06. 7. 28.>

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2. 5. 7.>

②의장 선거 등의 직무대행자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 5. 7.>

③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2. 5. 7.>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 5. 7.>

⑤제4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 5. 7.>

⑥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3항 부터 제5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전문개정 2006. 7. 28.>, <개정 2012. 5. 7.>

제7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의장 총선거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 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겸직금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 3. 11.> [중전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2.1.10.]

제1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0.]

제3장 회 의

제1절 개의.휴회.회기.선포.의사일정 등

제13조(개의) 본회의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10.]

제14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중이라도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10.]

제15조(회기) ①의회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10.]

제1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때까지 법 제72조제 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7., 2022.1.10.>

③회의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중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1.10.]

제17조(의사일정) ①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06. 7. 28.>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

고 개의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1.10.]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06. 7. 28.>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1.10.]

제1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1.10.]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1998. 7. 3., 2004. 3. 11.>

②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1. 3. 18.>

③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3. 11.>, <개정 2012. 5. 7., 2021. 3. 18.>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1.10.]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8.>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신설 2006. 7. 28.>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1.10.]

제2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1998. 7. 3., 2006. 7. 28.>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의2에서 이동 2022.1.10.]

제23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6. 7. 28., 2021. 3. 18.>

[종전 제19조의3에서 이동 2022.1.10.]

제2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6. 7. 28.>

[종전 제19조의4에서 이동 2022.1.10.]

제25조(조례안 예고)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입법예고에 관해 같은 회의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2.05.07> <개정 2021. 3. 18.>

[중전 제19조의5에서 이동 2022.1.10.]

제26조 (동회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회는 동 의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중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1.10.]

제27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전문개정 2006. 7. 28.>

[중전 제21에서 이동 2022.1.10.]

제28조(의안 · 동회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 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8.>

②구청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7. 3., 2006. 7. 28.>

[중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1.10.]

제29조(번안) 번안동의를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한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이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 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가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1.10.]

제30조(안전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 of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1.10.]

제31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6. 7. 28.>

[종전 제24조의2에서 이동 2022.1.10.]

제32조(의안의 정리) 본 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7. 3., 2006. 7. 28., 2021. 3. 18.>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2.1.10.]

제33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의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1998. 7. 3., 2021. 3. 18.>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2.1.10.]

제3절 발 언

제34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2.1.10.]

제35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2.1.10.]

제36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1. 3. 18.>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2.1.10.]

제37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1., 2022.1.10.>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2.1.10.]

제38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8.>

[중전 제31조에서 이동 2022.1.10.]

제39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중전 제32조에서 이동 2022.1.10.]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1.>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1.> <개정 2021. 3. 18.>

③의장은 본회의 개회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를 정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되,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의중에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1.> <개정 2021. 3. 18.>

[중전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2.1.10.]

제4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중전 제33조에서 이동 2022.1.10.]

제42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중전 제35조에서 이동 2022.1.10.]

제43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을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2.1.10.]

제4절 표결

제44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2.1.10.]

제45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2.1.10.]

제46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2.1.10.]

제47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4. 3. 11., 2022.1.10.>

② 삭제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2.1.10.>

④ 삭제

[중전 제40조에서 이동 2022.1.10.]

제48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04. 3. 11., 2006. 7. 28., 2021. 3. 18.>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감표위원은 다른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중전 제41조에서 이동 2022.1.10.]

제4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중전 제49조에서 이동 2022.1.10.]

제50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중전 제43조에서 이동 2022.1.10.]

제5절 회의록

제51조(회의록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실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3. 18.>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중전 제44조에서 이동 2022.1.10.]

제5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1998. 7. 3., 2004. 3. 11., 2006. 7. 28.>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중전 제45조에서 이동 2022.1.10.]

제5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04. 3. 11., 2021. 3. 18.>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중전 제46조에서 이동 2022.1.10.]

제5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1., 2022.1.10.>

②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3. 18., 2022.1.10.>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중전 제47조에서 이동 2022.1.10.]

제4장 위 원 회

제55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중전 제48조에서 이동 2022.1.10.]

제56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22.1.10.]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 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신설 2006. 7. 28.>

[종전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2.1.10.]

제58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4. 3. 11.>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2022.1.10.]

제59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22.1.10.]

제60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에서 이동 2022.1.10.]

제61조(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중전 제53조에서 이동 2022.1.10.]

제62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중전 제54조에서 이동 2022.1.10.]

제63조(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2006. 7. 28.]

[중전 제54조의2에서 이동 2022.1.10.]

제64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그 밖의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중전 제55조에서 이동 2022.1.10.]

제65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

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2.1.10.]

제66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10.]

제67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1.10.]

제6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종전 제56조에서 이동 2022.1.10.]

제69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종전 제57조에서 이동 2022.1.10.]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3. 11.>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04. 3. 11.>

[종전 제58조에서 이동 2022.1.10.]

제7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1. 3. 18.>

[종전 제59조에서 이동 2022.1.10.]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장 제목 신설 2022.1.10.]

제72조(예산안의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6. 7. 28.>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06. 7. 28.>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8.>

[종전 제60조에서 이동 2022.1.10.]

제73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를 재적위

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중전 제61조에서 이동 2022.1.10.]

제74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중전 제62조에서 이동 2022.1.10.]

제75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중전 제63조에서 이동 2022.1.10.]

제76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6. 7. 28.>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6. 7. 28.>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할 때에는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6. 7. 28., 2021. 3. 18.>

[중전 제64조에서 이동 2022.1.10.]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7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4. 3. 11.>

④ 삭제 <2004. 3. 11.>

[중전 제65조에서 이동 2022.1.10.]

제78조(구정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1.>

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수와 질문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04.3.11, 개정 2021.3.18.>

③구정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4. 3. 11.>
<개정 2021. 3. 18.>

④질문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관국장 등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답변 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1.>

[중전 제65조의2에서 이동 2022.1.10.]

제79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에서 이동 2022.1.10.]

제80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67조에서 이동 2022.1.10.]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

제81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신 중의 여성의회원이 청가서 및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2.10.5.>

③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22.10.5.>

④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2.10.5.>

[종전 제68조에서 이동 2022.1.10.]

제82조(의원의 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종전 제69조에서 이동 2022.1.10.]

제8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7. 28., 2008. 3. 27., 2022.1.10.>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종전 제70조에서 이동 2022.1.10.]

제84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7. 28.>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8.>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8.>

④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종전 제71조에서 이동 2022.1.10.]

제85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8.>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8.>

③피심위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2조에서 이동 2022.1.10.]

제8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7. 28., 2008. 3. 27., 2022.1.10.]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7. 28.>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3. 27., 2021. 3. 18., 2022.1.10.>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7. 28.>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에서 이동 2022.1.10.]

제8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6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2.1.10.>

②제86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의의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중전 제80조에서 이동 2022.1.10.]

제88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중전 제81조에서 이동 2022.1.10.]

제89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8.>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중전 제82조에서 이동 2022.1.10.]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의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이상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정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권 날로 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본조 신설 2022.1.10.]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해촉·제척·회피) 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0.]

제92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0.]

제9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8.>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종전 제83조에서 이동 2022.1.10.]

제8장 질 서

제94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7. 3., 2004. 3. 11.>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중전 제73조에서 이동 2022.1.10.]

제95조(회의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날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중전 제74조에서 이동 2022.1.10.]

제96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1., 2006. 7. 28.>

[중전 제75조에서 이동 2022.1.10.]

제9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의 안심의에 필

요한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중전 제76조에서 이동 2022.1.10.]

제98조(방청)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중전 제77조에서 이동 2022.1.10.]

제99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등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②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따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중전 제78조에서 이동 2022.1.10.]

제9장 보 칙 [장 제목 신설 2022.1.10.]

제100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중전 제84조에서 이동 2022.1.10.]

제101조(규정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1., 2006. 7. 28.>

[중전 제85조에서 이동 2022.1.10.]

부 칙 ('95.3.1)

이 규칙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7.3)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1)

이 규칙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11)

이 규칙은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